

2015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1,000호[1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하 거주)으로 구분 공급]

지역	공급호수			지역	공급호수		
	소계	단독거주	공동거주		소계	단독거주	공동거주
서울	375	338	37	충북	30	27	3
인천	30	27	3	충남	50	45	5
경기	210	189	21	전북	30	27	3
부산	55	49	6	전남	10	9	1
대구	30	27	3	경북	35	32	3
광주	35	31	4	경남	30	27	3
대전	50	45	5	제주	5	5	-
강원	25	22	3				-

- *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충남지역에 포함하여 물량 배정
- * '공동거주' 미달의 경우 해당 물량은 '단독거주' 물량으로 대체

2. 신청자격 및 순위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6. 1)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5년도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타 시·군 출신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 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 **대학교 인정기준** :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의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4.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기준)”

나. 신청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대학생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 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지적 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1순위 자격 선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2순위 자격 선정 대상

□ “소득” 산정 대상(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기준 포함)

-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소득 산정 항목(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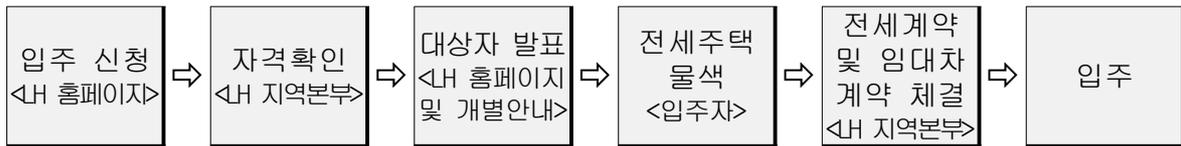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입주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장애인” 인정 가구

-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3. 신청절차 및 일정

가. 신청절차



나. 신청기간 : '15. 6. 23(화) 10:00 ~ 6. 25(목) 17:00 (3일간)

-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단, 공사에서 인정하여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한함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공동거주자 신청방법 : 1호의 주택에 '2인 이상 3인 이하'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

-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하여 신청함(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성(同性)에 한함)
- 입주대상자 모두 상기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 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마.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5. 6. 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공 통	① 주민등록등본(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 (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추가 첨부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신청인(대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부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님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초본 등 추가 제출
	③ 재학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첨부
④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우에 한해 첨부 	
⑤ 장애인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3순위 장애인 중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첨부 *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⑥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⑦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한해 <u>시설퇴소확인서 및 시설등록증</u> 첨부 	

※ **입주 신청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 400Kbyte로 제한**)

※ 인터넷 신청내역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바. 입주자 발표 : '15. 7. 30(목) 16:00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 내외를 입주자로 발표하고, 입주자의 병역,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배수 초과 2~3배수를 예비자로 관리
- ※ 예비자는 추후 지역별로 LH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 (SMS, e-mail, 홈페이지 게시 등)하고 **소명기한 부여**
- ※ 확정된 입주자는 **입주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4. 입주자 선정방법

가. 단독거주 신청의 경우 :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구분	선정기준						
1순위	경쟁시 추천(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	<p>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천(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별 배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00;"> <th style="width: 70%;">평가항목</th> <th style="width: 3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td> </tr> <tr> <td>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 2점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3순위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천(LH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천)으로 입주자를 선정						

구분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평가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td> </tr> <tr> <td>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 1점</td> </tr> <tr> <td>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점 2점 1점</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평가항목	점수																				
① 무주택 여부 · 무주택	3점																				
②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2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가정의 경우 150% 이하)	3점 1점																				
③ 가구원수 · 5인 이상 · 3인 이상 4인 이하 · 3인 미만	3점 2점 1점																				
	<input type="checkbox"/> 소득기준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3인이하 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4인 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5인이상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7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314,22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657,25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892,010원</td> </tr> <tr> <td>소득 10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734,603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224,645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560,026원</td> </tr> <tr> <td>소득 12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681,52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269,57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672,030원</td> </tr> <tr> <td>소득 15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101,9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836,96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8,340,030원</td> </tr> </tbody> </table> <p>※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 ※ 기타 소득 산정 항목 등은 “2순위 자격 선정 대상” 중 소득 설명 항목 참조</p>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소득 120% 이하	5,681,520원	6,269,570원	6,672,030원	소득 150% 이하	7,101,900원	7,836,960원	8,340,030원
구분	3인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소득 100% 이하	4,734,603원	5,224,645원	5,560,026원																		
소득 120% 이하	5,681,520원	6,269,570원	6,672,030원																		
소득 150% 이하	7,101,900원	7,836,960원	8,340,030원																		
	<p>■ 무주택 여부, 소득, 가구원수 산정은 아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p> <p>▷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p> <p>▷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p>																				

나. 공동거주 신청의 경우 : 단독거주 신청시의 순위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신청순위 조합에 의거 순서를 정하되 동일 조합인 경우는 추첨(LH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추첨)으로 정함

선정순위		
① 1순위+1순위+1순위	② 1순위+1순위+2순위	③ 1순위+1순위+3순위
④ 1순위+1순위	⑤ 1순위+2순위+2순위	⑥ 1순위+2순위+3순위
⑦ 1순위+2순위	⑧ 1순위+3순위+3순위	⑨ 1순위+3순위
⑩ 2순위+2순위+2순위	⑪ 2순위+2순위+3순위	⑫ 2순위+2순위
⑬ 2순위+3순위+3순위	⑭ 2순위+3순위	⑮ 3순위+3순위+3순위
⑯ 3순위+3순위		
<p>※ 예)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1순위 1명과 2순위 1명이 공동거주 신청시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신청한 신청자가 우선함</p>		

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가.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 포함)	기타 도(道)지역
75백만원/호	55백만원/호	45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함

나.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 공동거주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까지 가능

6.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7. 임대조건

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순위 2순위	1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3순위	200만원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금 지원 규모별 지원금리

구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1순위 2순위	연 1.0%	연1.5%	연2.0%
3순위	연 2.0%	연2.5%	연3.0%

나.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p>◆ 전세지원금 7,5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p> <p>※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100만원) × 2% ÷ 12] = 123,33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p> <p>※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7,500만원 - 200만원) × 3% ÷ 12] = 182,5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p>
<p>◆ 전세지원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p> <p>※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175만원) × 2% ÷ 12] = 80,41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p> <p>※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5,000만원 - 500만원) × 3% ÷ 12] = 112,5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p>

8. 입주자격 확인방법

-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여부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가점항목 : 무주택 여부, 소득 확인
-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시
- 상기 안내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및 배점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등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소명기한을 부여하고, 소명서류제출 기한내 해당 서류를 LH 홈페이지에 등록
 - * 소명대상 안내 : ‘15. 7.30(목) 16:00 이후 SMS 및 LH 홈페이지 당첨자 발표를 통해 확인
 - * 소명기간 : ‘15. 7.31(금) ~ ‘15. 8.13(목)
 - * 소명서류는 소명기한(별도안내)내 LH 홈페이지에 개별 등록 또는 직접 제출
 - 소명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

9. 신청 부적격자

- 가.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지원 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생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이 제외
- 나.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주)인 경우 대상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 금회 모집시 `15년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시 입력한 입주자격 및 가점으로 입주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자와 예비자에 한해 자격 검색(“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후 최종 입주자와 예비자를 선정
 - ※ 인터넷 신청내역 입력 오류 및 첨부자료 누락 또는 식별불가 등의 경우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간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탈락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 신청방법 및 첨부파일 조정, 개인 pc 환경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기 바람
 - 방화벽 등으로 인해 첨부기능 등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음
(ex . 대학교, 공공기관 등)
-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형제자매의 경우)은 전세 임대주택 각각 신청 가능
-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입주 이전 자퇴시 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시까지 학적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공동거주 신청(계약)시 유의사항

- 공동거주 신청은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 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며, 소재지역이 다른 경우 각각 해당 지역에 ‘단독거주’로 신청하여야 함
 - 예) - 공동거주 신청자 2인 모두 서울소재 대학 재학중인 경우 신청 가능
 - 공동거주 신청자 1인 서울소재 대학 재학, 1인 경기소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단독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단독 계약 뿐만 아니라 입주대상자로 선정(예비자로 선정된 경우도 가능)된 자와 2인 이상 공동계약이 가능하나, 공동거주 신청자는 반드시 함께 신청한 공동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거주는 1호에 “2인 이상 3인 이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성(同性)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단, 가족의 경우 가능)

- 계약은 LH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체결하며, 전세지원액은 호당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준용함
 - 수도권에서 공동거주자 2인 주거지원시 1호에 75백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별 각각 75백만원씩 지원이 아님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당 전세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당 순위별 임대조건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함
- 50㎡초과 주택에 2인 이상 입주 후 동거 입주자가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여 1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지원은 가능하나 월 임대료는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부담(기간만료 후 타 주택으로 이사시 50㎡ 이하만 가능)
 - ※ 병역, 편입, 해외연수, 유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인정하며, 변심 등을 이유로 공동거주를 단독거주로 전환 불가

다.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에 한해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공급물량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 지원(지원한도 55백만원)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지역 내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 ※ 계약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입주시 선지급한 계약금 중 본인부담금(100~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LH에서 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며, 잔금은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 입주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 건강보험료 증액(추가),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불가

- 병역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주택소유자 및 LH 지역본부와 협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기타

-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때에는 주택을 계속 공급(단, 복학 및 병역필 증빙)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신청인과 배우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15년 대학생 전세 임대 관련 Q&A 참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을 준용
 - 향후 기타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11. 입주신청 이후 제출서류

가. 복학예정 확약 각서 등 (계약요청 전 해당 LH 지역본부로 제출)

- 복학예정자는 `15년 복학예정 확약 각서(공사 소정 양식)를 제출하며, 복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를 제출

나. 기타 추가 제출

- 입주신청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 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 대상에서 제외함

12.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http://jeonse.lh.or.kr)

함께 만들어요. clean 

부조리신고센터 Tel. 031-738-7150, 7162 <http://clean.LH.or.kr>

2015. 6. 1